

## Focus

포커스 The Monthly Technology & Standards

# 신기술제품인증 중소기업지원 설명회 개최

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 
02-509-7286

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최갑홍)은 1월 24일부터 2월27일까지 제조업체 및 구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(NEP) 인증제도 및 신기술제품 발굴(LABCON)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.

• 동 설명회는 한국기술거래소, 기계공제조합, 한국우수기술인증협회와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청과 테크노파크에서 실시됨

※ NEP(New Excellent Product)인증제도 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탁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

※ LABCON(Laboratory to Containership)지원제도 :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·판로·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

■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NEP인증제도와 함께 우수재활용제품인증(GR), 물류표준설비인증(LS), 우수소프트웨어인증(ES) 등 우수

제품에 대한 개별인증의 개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.

• NEP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시 선행기술조사서를 의무화 하였으며 58개 공공기관에서는 NEP인증제품을 20%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법령에 규정함.

• GR인증에 대해서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제품별 인증기준 및 별도로 시행 준비 중인 재제조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,

• LS인증과 ES인증은 인증평가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.

■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NEP인증 및 판로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발굴 지원제도(LABCON)에 대해서도 설명한다.

■ 기술표준원은 이번 7개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 신용판매제도, 하자보증제도 등 인증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

##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일정

### ■ 일시 및 장소

일시	지역	장소	연락처
1. 24(수)	경기, 인천	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층 대회의실	부천산업진흥재단 팀장 김성호 032-621-2080-5
1. 26(금)	대전, 충남, 충북	대전·충남중기청 2층 대강당	중기청 기업지원과 민경석 041-865-6105
1. 31(수)	대구, 경북	대구·경북중기청 3층 대회의실	시험연구지원팀 정광석 053-659-2264, 019-558-5200
2. 6(화)	부산, 울산	부산·울산중기청 대회의실	중기청 기술지원과 조해만 051-601-5131
2. 8(목)	광주, 전남북	광주·전남중기청 2층 대회의실	중기청지원총괄과장 김낙찬 062-360-9150
2. 23(금)	경남, 창원	경남중기청 3층대회의실	중기청 시험검사팀 최정일 055-268-2573, 017-580-2221
2. 27(화)	강원	강원중기청 대회의실	중기청 기업지원과 정수영 033-260-1600

### ■ 설명내용 및 시간계획

일정	내용	시간	담당
13:30~14:00	기술표준원 동영상 및 표준교육 영상자료	30분	기술표준원
14:00~14:40	신제품인증제도 (GR, ES, LS 포함)	40분	기술표준원
14:40~14:50	정보제공 및 판매지원제도 10분	기술거래소	
14:505~15:00	인증제품 신용판매제도	10분	기계공제조합
15:00~15:10	NEP 사후관리 등	10분	우수기술인증협회
15:10~15:30	LABCON PLAN 발굴 지원제도	20분	기술표준원
15:30~16:00	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	30분	기술표준원, 기술거래소 기계공제조합

함으로써 지역소재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 앞으로 민간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인증

제품에 대한 판로촉진, 자금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.

## Focus

### 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
제22조(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)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”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
2. 지방자치단체
3. 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정부투자기관
4.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(이하“인증제품”이라 한다)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.

제24조(인증제품의무구매비율)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
### 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

제6조(신제품인증신청서 등)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신제품인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신청제품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
3.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
4. 「특허법」제58조 및 「발명진흥법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이 발행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(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5. 다른 법률에서 인가,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

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

### ■ NEP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사항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사목에 따른 NEP인증제품의 수의계약

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특정연고자, 지역주민,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

사.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행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·구매하는 경우

-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」 제14조(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)에 따른 중소기업 개발 NEP인증제품 우선구매(중소기업청)

제14조 (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) 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(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8조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가점 부

여(조달청)

제18조 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·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2.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, 우수품질물품,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
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NEP인증기업 우대 지원
- 기술신용보증기금 :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(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)
-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(국민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우리은행) NEP인증기업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지원(대출조건 평가시 가점 부여)
- 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”에 NEP인증기업 가점 부여(중기청)
- 기계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품질보장사업(입찰보증, 계약보증, 차액보증, 지급보증, 하자보증 등) 우대 지원

■ 정부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정비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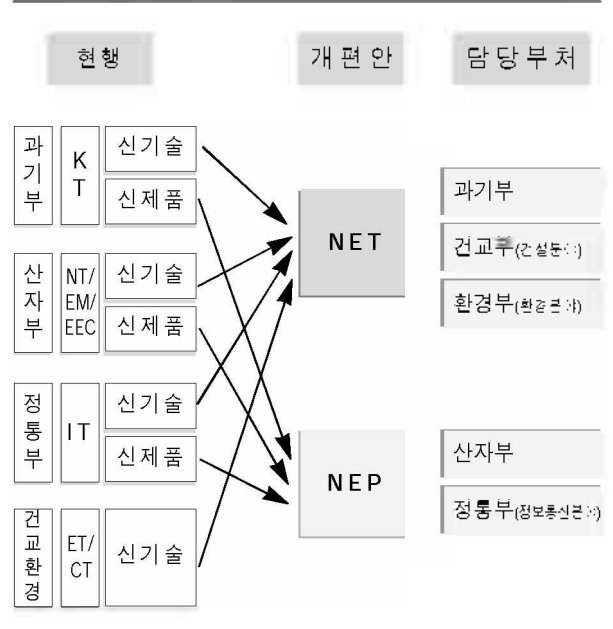
- ※ 2007년 1월23일 현재 731품목 인증
- 정부는 그간 NT, EM, EEC(산자부), KT(과기부), IT(정통부), CT(건교부), ET(환경부) 등의 신기술 인증을 5개부처에서 운영
  - 기존의 인증제도는 기술, 제품, 공정,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 중복문제

가 발생

- 기존의 인증은 폐지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 및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 인증으로 통합 정비하여 '06년 1월1일부터 시행

■ 기존인증의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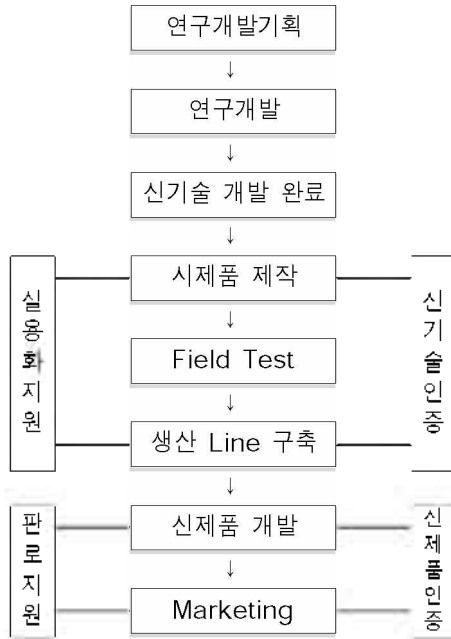
- NT, EM, EEC 등 기존의 인증제도는 2005년 12월31일부로 폐지
- 기존 제도의 인증 중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인증은 성격별로 분류하여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인증으로 연계하고,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을 신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



■ 신제품인증 신청과 심사

- 신제품 인증을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개발제

# Focus



[ 신제품 개발 체계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대상 ]

품이 신제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

- 신제품 인증의 대상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제품

\* 신기술 인증의 대상  
건설시공 공법, 환경처리 공정, 제품생산·제조기술, 시제품 상태의 제품기술

- 인증 제외 대상  
·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
·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
·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

- 식품, 의약품,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
-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(KS)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(KICS)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
-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
- 소방방재용품, 승강기 부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판 이전에 인가, 허가, 인증,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신제품인증의 신청이 가능함.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
    - 신청서 구비서류: 개발된 제품설명서, 특허·실용신안 등 신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,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(해당업체에 한함),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, 허가, 인증, 형식승인 등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(해당업체에 한함)
- 선행기술조사서(한국특허정보원, (주)웹스, (주)한국IP보호기술연구원)

- 신청서 접수
  - 기술표준원 민원실(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)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(인터넷 접수는 불가)
  - 연중 수시 접수하며, 수수료는 무료
  - \*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신청 가능한 경과 기간은 3개월

- 심사
  - 개개의 신청건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심사
  - 심사는 서류심사, 면접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로 진행
  - NET(신기술)인증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NET인증에

심사절차	심사내용
1차심사 (서류 및 면접심사)	①신제품 인증 대상 여부 ②기술성 : 개발기술의 독창성, 기술수준과 난이도, 개발능력, 파급효과 등 ③사업성 :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 정도, 수입대체 효과, 향후 성장 가능성 ④제품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확정 ⑤인증심사의 계속 진행여부 결정
현장심사	①독자 설계기술 확보여부 ②신기술제품의 지속적 생산가능 여부(품질시스템)
제품심사	제품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개발제품의 ①구조, ②재료, ③치수, ④성능, ⑤내구성, ⑥환경 시험 등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제반 항목의 시험평가
2차심사 (면접심사)	①1차심사, 현장심사, 제품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②제품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판단 ③인증여부 최종 결정

[ 심사절차별 심사내용 ]

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는 신속인증절차를 적용

- 다음의 경우에는 1차심사시 기술성평가를 면제

- 신기술(NET) 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
-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
-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
- 신제품 인증 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

- 인증 처리기간은 3개월이며 신속인증절차의 처리기간은 1개월

· 인증 유효기간

- 유효기간은 3년, 1회에 한하여 3년간 유효기간 연장가능
- KT, NT 등 기존 인증으로부터 연계된 인증의 경우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신규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

## N - LABCON Plan

■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국내개발 신기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경쟁력이 있는 일등상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개발 신기술제품 발굴·지원사업(N-LABCON PLAN)을 새롭게 확대·개편

※ N-LABCON PLAN이란 “네트워크를 활용하여, 연구실 기술을 수출상품으로” 라는 의미의 (through Network, from LABoratory to CONtainership)의 약어

# Focus

구분	기 존 (LABCON PLAN)	개 선 (N-LABCON PLAN)
①발굴 수동적→능동적	신문광고	• R&D 성공제품 발굴 • 업종별 단체 추천 • 발굴 • 신문광고
②기술지원 단순→심층지원	단순기술지원 (2주)	• 심층기술지원(6개월~1년) • 단기 기술지원(1월)
③평가 일률적→차별화	NEP인증규정 일률적용	• R&D성공제품등 신속인증 • NEP인증 규정적용
④판로지원 제한적→전방위	공공기관 구매촉진	• 민간기업구매촉진책마련 • 공공기관 구매촉진

[ 심사절차별 심사내용 ]

■ 신제품 발굴 · 지원 사업을 기술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지원 R&D 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체제로 개선 · 운영

■ 기술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기술제품 발굴 · 지원이라는 의미에서『N-LABCON PLAN』이라고 명명된 “신기술제품 발굴 · 지원 사업”

- ① 국내에서 개발된 미래유망한 신기술제품 적극 발굴
  - 한국산업기술평가원,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, 한국기술거래소,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정부 R&D 성공 신제품, 기술평가완료 신제품을 다양하게 발굴
  - 기업이 현장경험을 토대로 자체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제품
  -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, TP 등에서 개발된 신제품 집중 발굴
- ② 발굴신제품이 요소기술 미흡시 심층기술지

## 원 신설

- 기술유관기관과 연계된 심층기술지원(6개월~1년) 추진
  -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자문단,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심층기술지원

③ 발굴신제품 NEP 인증의 Fast Track(신속인증)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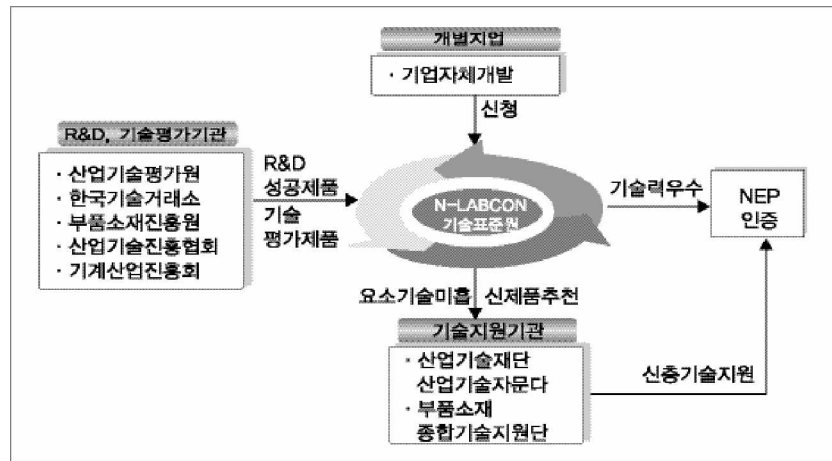
- 기술유관기관의 기술평가결과 및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, 정부 R&D 성공 신제품, 기술평가 완료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성 평가면제 등을 통해 신속인증

④ 발굴 신제품의 NEP 인증을 통한 지원 다각화

- 공공기관 일정비율 의무구매 추진 :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『산업기술 혁신 촉진법』에 반영하여 판로지원을 대폭 강화('06. 6)
- 시장규모 큰 민간기업 구매촉진 강화
  - 민간수요처에 맞춤형 납품이 가능하도록 공문발송 · 방문협의를 추진하고 민간구매 활성화 촉진대회의 개최 추진도 검토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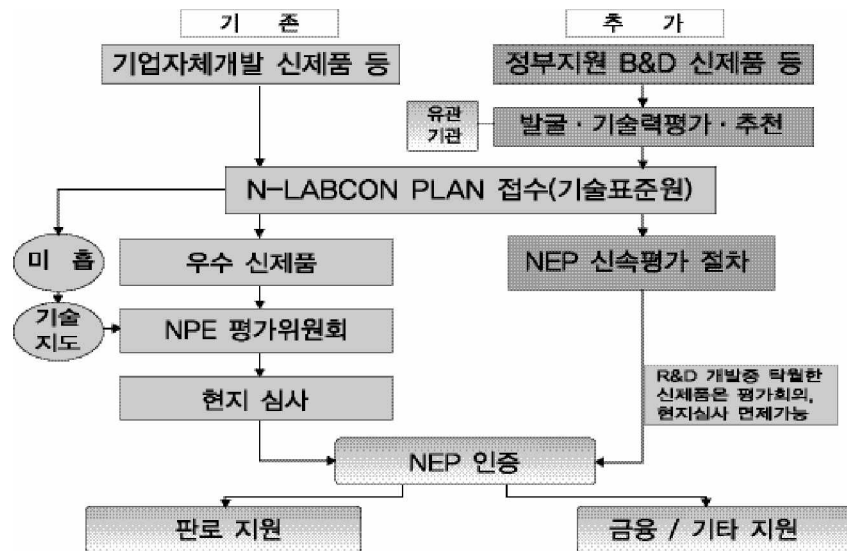
| 표준 2007. 2

붙임1



< 추진 체계도 >

붙임2



< 사업추진절차 >